

의안번호	제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4. . . (제회)	

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
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이종호 (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4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연구개발특구 입주관리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입주관리시스템의 구축·운영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이 개정(법률 제20062호, 2024. 1. 23. 공포, 7. 24. 시행)됨에 따라, 입주관리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입주계약 체결, 입주관리 관련 정보의 수집·가공·분석 등에 관한 업무로 정하고, 관리기관은 입주관리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해당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처리 등에 관한 자료를 입주관리시스템에 입력·관리하도록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,

연구개발특구개발계획의 변경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관할 시·도지사의 의견청취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는 경미한 변경사항의 범위에 연구개발특구개발사업의 시행기간의 단축 또는 1년의 기간 내 연장, 사업비의 10퍼센트 미만 내 변경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4. 6. 17. ~ 6. 27.)

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7조의2제4항제1호가목 중 “10퍼센트 미만을 변경하거나 3만제곱미터 미만”을 “10퍼센트 미만(특구개발사업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)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특구개발사업의 시행기간을 단축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하는 경우

7. 특구개발사업의 사업비를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
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3조의2(입주관리시스템의 처리 등) ①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입주관리시스템(이하 이 조에서 “입주관리시스템”이라 한다)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 체결에 관한 업무
2.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입주관리에 관한 정보의 수집, 가공 및 분석
3.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양도신고에 관한 업무
4.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의 해지에 관한 업무

5.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업용지의 매각·임대, 그 사후관리 및 산업단지의 입주에 관한 업무. 이 경우 “산업용지”는 “산업시설용지”로, “산업단지”는 “산업시설구역”으로 본다.

6. 그 밖에 입주기관의 편의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업무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업무

② 관리기관은 입주관리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처리 등에 관한 자료를 입주관리시스템에 입력·관리해야 한다.

제42조의 제목 “(업무의 위탁)”을 “(권한의 위임 및 위탁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3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·도지사에게 위임한다.

1. 법 제6조의2제6항 단서에 따른 특구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

2. 법 제6조의2제7항에 따른 특구개발계획의 내용의 관보 고시(같은 조 제6항 단서에 따라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만 해당한다)

②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한다.

제42조제3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2의2.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입주관리시스템의 구축·운영

부 칙

이 영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7조의2(특구개발계획) ① ~ ③ (생략)	제7조의2(특구개발계획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법 제6조의2제6항 단서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(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)를 말한다.	④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	1. ----- -----
가. 특구개발사업 면적 또는 토지이용계획 용도별 면적 의 <u>10퍼센트 미만</u> 을 변경 <u>하거나 3만제곱미터 미만</u> 을 변경하는 경우	가. ----- ----- --- <u>10퍼센트 미만(특구개 발사업 면적이 30만제곱미 터 이상인 경우에는 3만제 곱미터 미만으로 한다)</u> ---
나. (생략)	나. (현행과 같음)
2. 삭제	
3. ~ 5. (생략)	3. ~ 5. (현행과 같음)
<신설>	6. <u>특구개발사업의 시행기간을 단축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하는 경우</u>
<신설>	7. <u>특구개발사업의 사업비를 10</u>

⑤ (생략)

<신설>

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

⑤ (현행과 같음)

제33조의2(입주관리시스템의 처리 등) ①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입주관리시스템(이하 이 조에서 “입주관리시스템”이라 한다)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입주 계약 체결에 관한 업무
2.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입주관리에 관한 정보의 수집, 가공 및 분석
3.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양도 신고에 관한 업무
4.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입주 계약의 해지에 관한 업무
5.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업용지의 매각·임대, 그 사후관리 및 산업단지의 입주에 관한 업무. 이 경우 “산업용지”는 “산업시설용지”로, “산업단

제42조(업무의 위탁) <신 설>

<신 설>

지”는 “산업시설구역”으로 본다.

6. 그 밖에 입주기관의 편의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업무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업무

② 관리기관은 입주관리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처리 등에 관한 자료를 입주관리시스템에 입력·관리해야 한다.

제42조(권한의 위임 및 위탁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·도지사에게 위임한다.

1. 법 제6조의2제6항 단서에 따른 특구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

2. 법 제6조의2제7항에 따른 특구개발계획의 내용의 관보 고시(같은 조 제6항 단서에 따라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만 해당한다)

②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
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재단에 위탁한다. 1. ~ 12. (생략) <u><신설></u> 13. · 14. (생략)	<u>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한다.</u> ③ ----- ----- ----- --. 1. ~ 12. (현행과 같음) <u>12의2.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입주관리시스템의 구축·운영</u> 13. · 14. (현행과 같음)
---	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	
연 락 처	(044) 202 - 4744